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\*\*\*\*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[6570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74] 팀원 유주현 [6580]/E-mail: h1324yjh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9016호

시행일자 2015. 1. 29.

수 신 16개 시도지사회장, 26개 학회장, 20개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'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' 고시 정정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678('15.1.28) "정정고시 통보"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에서는 "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" 고시를 정정함에 따라, 귀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.

\* 정정사유 : 해당 약제(품명 : 피브로가민피)가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하여, 기준고시를 삭제함. 해당약제가 등재되는 시점에 맞추어 동 기준고시를 다시 시행할 예정임.

붙 임 : 정정고시 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”